

가족인가 노비인가?

천성림**

근대 중국의 민며느리, ‘동양식’(童養媳)*

초록 동양식은 영유아기에 시가로 입양되어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결혼하는 여성이다. 동양식 혼인관습은 한반도의 동옥저에서 원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송대에 처음 등장했고, 청말민국 시기에 가장 성행했다. 그것은 빈곤과 남존여비, 딸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관념이 결합한 것으로 대체로 하층민들 가운데에서 유행했다. 왜냐하면 남자는 혼인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재력을 줄일 수 있고 여자집에서는 지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중국 동양식의 역사와 배경을 한반도의 동옥저, 조선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동양식이 절정을 이룬 청말민초 시기, 가내수공업과 농업생산에서 여성 노동력의 비중과 가치를 재평가했다. 조선도 중국도 점점 노동력을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해 민며느리를 들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10살 이상 많은 경우가 많아졌다. 동양식은 대체로 가정에서의 지위가 낮았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거나, 시아버지의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것은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다. 시어머니와 관계가 마치 모녀처럼 다정하기도 했고 아들이 먼저 죽으면 며느리를 딸로 입양하거나 데릴사위를 들여 함께 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동양식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경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民国 시기 문학작품이나 언론기사에 남은 동양식의 처지는 한결같이 비참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동양식이라는 존재가 구중국의 상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제어 동양식, 가족, 노비, 빈곤, 재례, 여성노동력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086).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시집은 지 벌써 열세 해,
 오늘 아침 머리를 빗자니 문득 슬퍼지네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젓을 먹고,
 품에 안겨 함께 잠이 들곤 했지요.¹

이것은 청말의 저명한 시인이자 외교관이었던 황준센(黃遵憲, 1848~1905)이 지은 산가(山歌)² 중 일곱 번째 노래다. 객가 출신이었던 황준센은 객가의 산가를 다량 수집, 정리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산가를 지어 자신의 고향인 광둥성 가응주 매현(嘉應州 梅縣, 현재의 梅州市)의 다양한 풍속을 묘사했다. 위 작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시택으로 보내져 훗날의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젓을 먹고 자란 뒤 성인이 되면 결혼했던 ‘동양식’(童養媳),³ 우리말로 ‘민머느리’⁴를 제재로 한 것이다. 지방지에도 황준센이 살았

1 黃遵憲 山歌 7. 이 노래는 설산남 편저(2003), 『黃遵憲詩選』, 문이재, p. 18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번역은 필자가 다시 했다. 원문은 “嫁郎家十三年, 今日梳頭儂自憐, 記得初來同食乳, 同在阿婆懷裡眠.”

2 중국 남방, 특히 객가지구의 농촌이나 산촌에서 유행했던 길이가 짧고 자유로운 리듬의 민간 가요로, 문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3 지역에 따라 ‘養小媳’, ‘養媳婦’, ‘豚養’, ‘養媳婦’, ‘婆養媳’, ‘等郎妹’, ‘望抱媳’, ‘待年媳’ 등 다양한 호칭이 존재했다. 李圭原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무려 105종의 호칭이 있다고 한다. 李圭原(2016), 「近代中國童養媳別稱研究」, 『文史博覽』 5 참조. 본고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양식’으로 통일하되, 유형에 따라 다른 호칭도 사용한다. 영어로는 대체로 ‘Child Bride’, 즉 ‘아동신부’로 표현되고 있는데, 동양식은 넓은 의미에서 조혼이나 童婚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혼인방식과 생활도 다르고 지방지에서도 일반 조혼, 동혼과 구분해 ‘동양식’ ‘식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분상 아내보다는 머느리, 그것도 시어머니가 입양해 기른 머느리로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adopted daughter-in-law라고 해야 한다.

4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밑머느리, 밋메느리, 밋머느리 등으로 쓰며, 한자로는 ‘豫婦’, ‘預婦’로 표현한다. ‘민’의 뜻에 대해서는 ‘아래(밑)’, ‘없음’, ‘미리’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

던 시기 그의 고향에는 “여아가 태어난 지 겨우 한 달이면 동양식으로 시집을 보냈다”⁵고 하니 현실을 잘 반영한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날 머리를 손질하며 왜 슬퍼했을까?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나 형제자매가 그리워서는 아닐 것이다. 그 답은 며느리의 나이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식은 어릴 적에 시가에서 데려다 키운 뒤 열 서너살⁶이 되면 땀은 머리를 풀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다. 정식으로 시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 하면 떠올리는 성대한 의식과 연회 따위는 과감히 생략하고 조상의 사당에 절한 뒤 바로 합방을 한다. 이후 며느리는 지금까지의 양육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시부모를 모시고 가사노동은 물론 농사와 방직 등 온갖 일을 감수해야 한다. 아들(훗날의 남편)과 함께 품어 주었던 시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이유다.

동양식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혼인법을 통해 금지되었고⁷ ‘누속’(陋俗)으로 분류되어 오랜 기간 연구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부활한 고액 ‘차이리’(彩禮)⁸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다. 한자 ‘예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미리’이지만, 일반 며느리에 비해 무시당하고 또 시집을 때 아무 장식도 없이 맨몸으로 온다는 점에서 ‘아래나’ ‘없음’도 민며느리를 잘 표현하는 용어다. 이기문(1997), 「민며느리」, 『새국어생활』 7(4) 참조. 이기문은 ‘미리’로 본다. 한반도의 민며느리를 주제로 한 역사학자의 연구는 아직 없다.

5 光緒『嘉應州志』, 謝重光(2005), 『客家文化與婦女生活』, 上海古籍出版社, p. 162.

6 청대와民国 초기까지 법정 혼인연령은 남자 16세, 여자 14세였다. 1930년 국민정부가 반포한 『民法典』 第四編「親屬編」을 통해 혼인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2살씩 올렸다. 하지만 정혼(약혼) 연령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고 실제 완혼(결혼) 연령도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법적 혼인연령의 변화와 현실에 관해서는 肖愛樹(2005), 『20世紀中國婚姻制度研究』,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참조.

7 1950년 인민정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은 동양식을 명확히 금지하고, 동양식을 둘 경우 사형이라고까지 선포했다.

8 남자 측이 여자 측 가정에 보내는 재물로, 혼인 성립에 필요한 6례(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 중 ‘納徵’에 해당한다. ‘財禮’, ‘聘金’, ‘聘財’ 등으로도 칭한다. 물품과 현금을 구분해 각각 ‘빙례’, ‘빙금’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재례’ 안에 양자가 포함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차이리’(彩禮)라는 용어가 지배적이나, 본문에서는 ‘재례’로 통일해 사용한다. 영어로는 bride price(신부대)로 번역되지만 ‘재례’를 표현하기에 부족

1980년대 들어 연구가 개시되었다.⁹ 왜냐하면 과거 동양식 성행 배경의 하나가 고액 차이였기 때문이다.

마침 2003년 2월에 발생한 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동양식의 존재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복건성의 한 마을(莆田市 東海鎮 坪洋村)에 사는 교사 주스원(朱世文)이 아내인 주슈메이(朱秀美)를 구타해 죽인 사건인데 슈메이가 동양식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¹⁰ 이후 여러 학자의 방문조사를 통해 900여 가구에 4,300여 명이 사는 이 작은 마을에 무려 1,300명의 동양식이 있으며 심지어 한 소학교에는 33명의 6학년 여학생 중 14명이 동양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대 초반의 여학생 42%가 동양식이라는 것인데 이는 20세기 초 동양식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¹¹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당과

하다. “빙례로 맞이해야 처가 되며, 절차를 밟지 않고 사통한 것을 첩이라 한다(聘則爲妻, 奔則爲妾)”(『禮記 內則』)고 하듯 중국에서 재례가 없는 혼인은 합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납폐나 婚弊金, 婚納金, 일본에서는 結納金이라고 칭했다. 명 중기 이후 중국에서는 상품경제의 발달과 은본위의 화폐 경제에 따라 점점 화폐(은냥)가 대세가 되었다. 1930년 중화민국 민법,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모두 금지했지만 관례에서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고 있다.

- 9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何定華(1983), 「童養媳考略」, 『社會』 1이 최초의 논문이다. 하지만 잉첩제와 동양식, 조혼과 동양식을 혼동하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 2000년대 들어와 많은 연구성과가 쏟아져 나왔는데 현재 피인용지수가 높은 연구로 郭松義(2000), 『倫理與生活: 清代的婚姻關係』, 商務印書館과 王躍生(2003), 『清代中期婚姻衝突透析』,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를 들 수 있다. 두 저서 모두 한 장을 할애해 주로 제1역사당안관 소장 『刑科題本·婚姻家庭類類』에 근거해 청 중기 동양식의 혼인 상황을 설명했다. 기타 저술과 논문은 참고문헌 참조.
- 10 刘毅(2005), 「關於古代童養媳現象的思考」, 『中共鄭州市委党校學報』 77(원제 『半月談』 2005.2.).
- 11 郭松義(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청대 전반에 걸쳐 동양식이 기재된 주현은 전국에서 35%가 넘는다. 郭松義(2000), p. 252 참조. 인류학자 울프(1980)에 따르면 19세기 말 대만에 서도 동양식이 약 35%였다. Arthur P. Wolf (1980), *Marriage and adoption in China, 1845-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費孝通이 1936년 중국 동남부의 강촌에서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동양식은 40% 정도였으며, 강서성이나 복건성은 무려 80-90%에 달했다. 費孝通(1987), 『江村經濟: 中國的農民生活』, 香港: 中華書局, p. 39, pp. 54-55. 신중국 수립 후인 1953년, 3개구 8개 향촌조사 결과, 黃田鄉下村에서는 1,058명 부녀 중 동양식이 617명으로 58.32%였다. 『寧德市志』(1995), 北京: 中華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양식은 결코 근절되지 않았던 셈이다.

이 동양식 살인사건으로 동양식이라는 주제가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가 쏟아져 나왔다. 전공도 역사학뿐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민족학 등을 망라하고 있다. 동양식 자료는 대체로 관방자료와 지방의 민속자료로 구성되어 여성 자신의 입장을 알기 어려웠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생존해 있거나 혹은 그 후손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적지 않아 그들의 입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¹² 대부분 Kangqing(康克清), Li Zhen(李貞) 등 동양식 출신에서 중국 공산혁명에 투신한 여성의 인생역전을 다룬 것이고,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 신중할 필요는 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논문은 구술뿐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해 발굴한 지방의 산가와 민요를 바탕으로 동양식뿐 아니라 이름없는 평범한 여성들의 결혼생활과 감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¹³

영어권에서는 ‘양녀’(養女)라는 범주에서 동양식을 고찰한 아서 울프의 연구¹⁴가 이미 1980년에 발표된 바 있다. 대만의 장순(張珣)은 이 연구를 토대로 식민지 시기 대만의 양녀와 동양식의 지위를 비교하기도 했다.¹⁵

일본에서는 니다 노보루(仁井田陞)의 저술¹⁶ 일부에 동양식의 뜻과 다양한 명칭, 지역분포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연구는 복건성(福建省)

局, p. 625.

- 12 동양식 관련 구술자료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李小江(2003), 『讓女人自己說話: 親歷戰爭』, 北京: 三聯書店과 付琴仙 口述, 瞿曉曉·程郁 整理(2007), 『上海浦東童養媳個案調查記錄』, 『史林』增刊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堯山壁(2010), 『童養媳小丑』, 『經典閱讀』 참조.
- 13 李奎原(2016), 『女泣亦如訴: 從民間歌謠看中國歷史上的童養媳』, 『文教資料』 721; 王維娜(2009), 『婚姻, 性別與山歌』, 『民間文化論壇』 12; 胡群英·曹水旺(2020), 『最后的嫁歌: 關於和平縣客家新娘歌的田野調查』, 『嘉應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 38(2) 등 참조.
- 14 Arthur P. Wolf(1980).
- 15 張珣(2000), 『婦女生前與死後的地位: 以養女與養媳等爲例』, 『考古人類學刊』(臺灣大) 56.
- 16 『中國의農村家族』(1966), 東京大學出版會, 제3판, pp. 172-176.

의 익녀(溺女)¹⁷ 현상과 동양식 습관의 관계를 논한 오가와 요시유키(小川快之)의 논문 정도다.¹⁸

이처럼 국외 특히 중국에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동양식과 관련한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 역사학뿐 아니라 인류학, 민속학, 혼인가정사 등 분야에서 그 기원, 배경, 지위 등 다양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동양식이 중국의 특수한 혼인풍속으로 다루어져 주변 국가나 민족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중국 동양식의 원형은 한반도의 동옥저에 있으며, 조선 후기 서민층 사이에는 ‘민머느리’가 광범하게 존재했다. 데릴사위에 비하면 극히 적지만, 일본에서도 속칭 ‘연녀’(緣女)라 부르는, 이성(異姓)의 여아를 수양해 장래 며느리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¹⁹ 따라서 동아시아 혼인제도라는 범주에서 동양식 관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²⁰

또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청대에 한정되어 있어民国 시기의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학생이 급증하고 서양식 연애와 결혼이 유행했던民国 시기에 왜 동양식이 절정을 이루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

17 ‘익녀’는 갓 태어난 여자아기를 익사시킨다는 뜻의 ‘溺殺女嬰’의 준말이다. 때려 죽이거나 끓는 물에 넣어 버리는 등 더 참혹한 방법도 있지만 물통에 넣어 익사시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어서 여아살해를 대변하는 용어가 되었다. 과중한 조세와 부역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여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 ‘익자’ 아닌 ‘익녀’가 영아살해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근대의 익녀 관련 연구성과는 田紅湖(2016), 「近代溺女風氣中の嫁妝問題」, 『唐山師範學院學報』 1 참조.

18 小川快之(2014), 「清代江西·福建における‘溺女’習慣と法について」, 山本英史 編, 『中國近世の規範と秩序』, 東京: 東洋文庫, pp. 247-299.

19 일본 민법은 미혼의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머느리를 양녀 형식으로 수양했고 ‘양녀’라 불렀다. 하지만 대만 한족의 친속관념에 따르면 양녀를 집안 남자와 결혼하게 할 경우 이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되어 난륜혼이 된다. 따라서 대만 통치 시기 일본 정부는 장래 남편이 있는 양녀는 ‘養媳’, 아직 없으면 ‘양녀’라 부르게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동양식을 없애고 양녀로 만들었다. 張珣(2000), p. 19.

20 필자의 부주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중국의 동양식은 물론 한국의 민머느리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없었다. 郭松義의 논문이 원문 그대로 전재되어 있는 정도다. 郭松義(1998), 「清代的童養媳」, 『동양학연구』 4.

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구는 마치 1920·30년대 소설에서의 동양식 형상처럼 학대받는 며느리의 이미지만 강조할 뿐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여러 과정을 생략하고 어린 나이에 팔려 가다시피 한 동양식은 분명 시가에서 약자였고 주변적 가족이었다. 하지만 동양식의 종류는 다양했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반드시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들은 동양식의 성행 배경으로 높은 재례와 지참금 부담 완화에 기울어져 여성의 노동력이 갖는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비록 시가를 위한 ‘무급노동’(unpaid labor)이기는 하지만 동양식과 같은 일종의 보상헌에서 여성의 노동가치는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동양식의 역사와 등장배경을 한반도의 민며느리와 비교해 가며 간단히 개관한 뒤²¹ 동양식 성행 배경으로 기존연구에서처럼 재례와 지참금 등 혼인 비용 절약뿐 아니라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노동력의 가치를 재평가해 본다. 나아가 시가에서의 지위와 가족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지금까지 동양식 연구는 남부인 복건성과 광동성, 강서성에 집중해 있는데 지방지 민속자료를 통해 볼 때 청말민국시기에는 남북 불문 전국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기보다 전체적인 특징을 찾아낼 것이며 시기는 청말민국, 특히 민국 시기에 집중될 것이다.

21 일본의 경우 위의 주19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양녀가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2. 동양식의 원형과 중국 동양식의 역사

2.1. 동양식의 원형-옥저의 민머느리

1983년, 최초로 동양식 관련 논문이 발표된 이래 중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동양식의 기원을 주(周)대의 ‘잉제’(媵制)²²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잉제는 대체로 왕실과 귀족 등 상층가정에서 훗날 첩(후궁)을 들이기 위해 행해지던 것으로 일반서민과 무관하다.

동양식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진수(陳壽)의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동옥저조’에 보인다. 남조의 배송지(裴松之)는 “[동옥저의] 음식과 거처, 의복과 예절은 고구려와 비슷하다”(飲食居處, 衣服禮節, 有似句麗)라는 진수의 원문에 『위략』(魏略)을 인용해 혼인과 관련된 내용을 덧붙였다. 즉, “[옥저의 혼인 풍속은] 여자가 열 살이 되면 약혼을 하고 이후 시가에서 오랜 기간 성장한다. 성인이 되면 일단 친정으로 되돌아간다. 친정에서는 ‘책전’(責錢)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시가로 가서 그 집의 머느리가 된다.”²³라는 것이다. ‘책전’에 대해서는 그간 길러준 것에 대한 대가로 시가 측이 여자 측에 요구하는 금전 내지 지참금으로 보기도 하지만,²⁴ 정황상, 그리고 이후 민머느리의 역사를 감안할 때 여자 측이 요구한 재례(혼납금)로 보는 것이 맞을 듯싶다.²⁵ 왜냐하면 시가에서는 훗날의 결혼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22 시집갈 때 미성년의 조카를 데리고 가서 시가에서 기른 뒤 성년이 되면 남편의 첩으로 삼는 것이다.

23 원문은 “魏略曰, 其嫁娶之法, 女年十歲, 已相設許. 婿家迎之, 長養以爲婦. 至成人, 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 乃復還婿.”. ‘長養以爲婦’의 ‘婦’는 머느리를 의미한다. 머느리를 뜻하는 한자 ‘媵’은 남송 이후 보인다.

24 장승두(2002), 이복규 역, 「조선 원시 제종족의 혼인」, 『한국민속학』, p. 106. 원재는 조선 총독부(1938), 『朝鮮』 281호.

25 대표적으로 노태돈(1983), 「고구려 초기의 娶媵婚에 관한 일고찰」, 『金哲堉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p. 90 참조.

수 있을 뿐 아니라 며느리의 노동력을 평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딸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친정에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지』에 나타난 옥저의 민며느리, 즉 ‘양부’(養婦)는 훗날 중국에 행하는 동양식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10세 전후한 여자아이를 시가에서 데려가 양육하며 성인이 되면 약간의 재물을 보낸 뒤 며느리로 삼는 것이다.

3세기에 옥저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고구려에 복속되었고, 고구려는 당에 멸망했으나 민며느리 풍습이 고구려를 거쳐 중국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들이나 그들과 잡거한 한족 사이에 유행했을 가능성은 있다.²⁶ 하지만 민간의 혼인풍습에 박한 중국의 사서에서 옥저의 민며느리와 훗날 중국의 동양식의 연결고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한반도에는 옥저 이후 조선중기까지 예부 혹은 민며느리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고려에서 조선중기까지 혼인풍속은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²⁷이 대세여서일 것이다. 민며느리는 광의의 친영(여가남귀혼, 즉 시집살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 데릴사위(豫婿)나 민며느리(豫婦)제도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았다”²⁸

26 김인희에 따르면 고구려 유민 중 다수가 중국 남방으로 흩어져 苗族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김인희(2010),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유민』, 푸른역사 참조. 묘족은 고구려 멸망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묘족을 비롯해 瑤族, 黎族, 壯族, 傣族 등 중국 남방의 百越계 민족들과 고구려는 공통된 풍속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고구려의 서옥(婿屋)과 비슷한 일정기간 처가살이 풍속이나 혼인 후 친정살이를 하다가 출산 후 시가로 가는 長住娘家(不落夫家)도 그중 하나다. 고구려와 옥저 등 중국의 이른바 ‘동이족’의 혼인풍속과 중국 소수민족(때로 그들의 영향을 받은 한족도 포함해) 혼인풍속의 유사성 내지 계승성은 사료 문제 때문이겠지만 현재로서 불모지로 남아 있다.

27 신랑신부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이 일정 기간 신부 집에 거주하는 방식.

28 마르티나 도이힐러(2003), 이훈상 옮김, 『한국의 유교화 과정』, 아카넷, p. 329.

고 하니, 민간의 서민들 사이에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귀여가혼이 친영으로 전환하는 조선 후기부터 민며느리(예부) 관련 기사가 본격 등장한다. 영조대 한치윤(韓致胤)은 『해동역사』(海東譯史)에서 “서가(婿家)에서 여자를 맞이해 어른이 되기까지 키워 부인으로 삼는 풍속이 지금도(今猶有) 민가에 보이고 있는데 이를 일러 예부(預婦)라 한다”고 했으며,²⁹ 정조 대 정동유의 『주영편』(晝永編)에도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 민며느리가 흔한 현상이었다고 되어 있다.³⁰ 지금도라고 하는 데서 민며느리가 조선 후기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와 근세, 한국과 중국의 민며느리의 연결고리를 찾기란 쉽지 않지만 시공을 초월해 비슷한 혼인형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2.2. 중국 동양식의 역사

중국에서 동양식은 늦어도 송원대에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11세기 북송 철종(哲宗)대의 관리 두굉(杜絃)의 묘지명에 “민간에서는 여자 아이를 정혼 후 성혼 전까지 남자집에서 기르기도 하는데 이를 ‘양부’(養婦)라 한다.”³¹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대가 되면 『원사(元史)』 「형법지」에 “아직 성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에서) 여자아이를 노비로 팔아넘길 경우 태형으로 다스린다. 여아는 집으로 돌려보내며, 여자 측이 받은 재례는 환수하지 않는다”(諸以童未成婚男婦, 轉配其奴者, 笞五十七, 婦歸宗, 不追聘財)고 하듯 시가에서 동양식을 노비로 팔아

29 김완섭(1975), 『한국혼인고』, 고려대출판부, p. 47.

30 鄭東愚·鄭東愈(2016), 안대회 역, 『晝永編』, 휴머니스트, p. 216. 『晝永編』의 민며느리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鄉曲小民之俗, 有男年未壯時, 先媒年長女子, 迎置其家, 以助農桑之勞, 待其男稍壯, 始與成夫婦, 謂之預婦. 故往往有婦年長於夫十數歲者, 此乃無識下流之事也.” 鄭東愚·鄭東愈(2016), p. 590.

31 “民間女幼, 許嫁未行, 而養諸媠氏者, 曰‘養婦’” 이 기사는 晁補之, 『鷄肋集』 卷六七 「杜公(絃)墓志銘」에 있으며 필자는 方建新(1983), 「也談童養媳」, 『社會』 4, p. 55에서 재인용.

넘길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며, 관한경(關漢卿)의 희곡 『두아원』(竇娥冤)에는 두아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일곱 살 때 동양식으로 팔려나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미 동양식이 민간관습으로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식에 관한 기록이 급증하는 것은 명대를 거쳐 청 중기 이후부터이며³² 특히 태평천국운동을 전후해 강남 지방에서 성행했다고 한다.³³

청말민국시기 지방지 ‘민속’부분과 1930년 민법전 반포를 앞두고 이루어진 광범위한 사회조사 결과물인 민사습관조사보고록에는 동양식의 존재가 중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다.³⁴ 북부보다는 남부, 그중에서도 강서, 복건, 광둥 지역에서 가장 성행했고, 복건성과 광둥성의 경우 객가 거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고 전족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³⁵ 화남에 동양식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동양식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장족(藏族)과 만주족 일부를 제외하고 소수민족 거주지에는 동양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³⁶ 그 이유로 소수민족 지

32 郭松義(2000), 王躍生(2003).

33 費孝通(1987), p. 48. 費孝通은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란 후 생산력 약화에 따른 빈곤과 혼란, 특히 여성인구의 급감 때문으로 보인다. 태평군이 지나갈 때마다 노약자 특히 여성들 다수가 살해당했고, 강간 혹은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여성이 부지기수였다. 훗날 아들의 혼인난을 고려해 어린 여아를 입양했고 여자 측 부모 또한 양육 대신 시가 입양을 선택한 것이다.

34 丁世良 編(1989~1997), 『中國地方志民俗資料彙編』, 北京圖書館出版社;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部 編, 胡旭晟 등 点校(2005), 『民事習慣調查報告錄』, 中國政法大學出版社. 이에 따르면 민국 시기 동양식이 존재하고 유행한 지역은 陝西, 河北, 遼寧, 山西, 河南, 山東, 江蘇, 浙江, 江西, 湖北, 安徽, 福建, 台灣, 廣東, 廣西, 海南, 四川, 重慶, 貴州 등 19개 성이며 특히 복건, 광둥, 광서, 강서 4지역과 객가지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35 중국에서 전족여성의 남부 지역 분포와 노동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剛部利良(1942), 「支那女性紡績勞働者創出過程の特質」(1), 『東亞經濟論叢』 2(2) 참조.

36 侯國隆(1994), 「關於舊時梅州客家童養媳問題的探討」, 『廣東史志』 4, p. 50.

구는 연애결혼이 대세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³⁷ 필자가 보기에 이런 지역에서는 ‘장주낭가’³⁸라고 하는, 딸이 결혼 후 적게는 3년, 길게는 20년이나 친정에 남아 일하는 풍속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친정에서는 재래 대신 훗날 시집살이로 인한 딸의 노동력 상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대에 시작된 동양식은 청말에 크게 성행하며民国시기에 절정에 도달했다.

민국 초년 사법부의 강서남부 공남(贛南) 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래의 부담을 벗어나려고 동양식을 수양하는 자가 10중 5, 6이다. 양식 외에 또 소위 화등녀(花等女)나 망랑식(望郎媳)³⁹도 10중 3, 4이다”라고 한다.⁴⁰ 아주 부자가 아니면 정식 혼배는 평균 15%에 불과했던 것이다.

페이샤오통(費孝通)이 동양식의 절정기라고 한 1930년대 신문잡지에는, “동양식이 일종 풍기가 되어 대도시를 제외한 각 현과 각 촌진에서는 딸을 낳은 부모 모두 딸을 남의 집 동양식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집안 형편을 먼저 고려했고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았다”⁴¹고 할 정도였다. 그로 인해 부모와 함께 사는 어린 딸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조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1920·30년대가 민며느리 전성시대였다. “지금 시골에서는 ‘딸 팔아서 빚 갚는다’는 속언이 있는데, 흥년이 들면 4~5세

37 侯國隆(1994).

38 장주낭가를 모계제의 유풍으로 보는 학자가 많지만, 부계제가 확립된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가 비율이 높은 한족 일부 지구에도 발견되기 때문에 혼인으로 상실될 딸의 노동력 보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전체적으로는 남월계 소수민족의 풍습에 해당하며 한족의 경우, 그러한 소수민족과 오랜 잡거를 통해 영향을 받은 광동성 일부 지역에만 보인다. 장주낭가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다.

39 花等女와 望郎媳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갓난 여아를 입양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동양식에 포함된다.

40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部 編(2005), p. 707.

41 劉貴英(1937), 「童養媳的苦痛」, 『江西婦女』 1.

정도인 딸의 장래를 약속하고 그 혼수전을 받아 일시적 어려움을 넘기는 일조차 있다. 곽산(郭山) 등 고원 지방에서는 사위집에서 받는 대금을 ‘선폐’(先幣)라 불렀는데 딸을 5, 6명 가진 부모가 줄지에 부자가 되는 일도 있었다⁴²고 하듯이 빈한한 가정에서는 딸을 민며느리로 팔아 받은 혼수돈으로 굶주림을 해결했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아들보다는 딸 측의 수요가 절박했으며 아울러 돈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가에서는 며느리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더 여자의 나이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주영편』에 따르면, “비천한 시골 백성 풍속에 사내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미리 연상의 여자를 중매해 그 집에 맞아 들여 농사나 누에치는 일을 돕게 하면서 그 사내아이가 제법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부부가 되게 한다. 이를 민며느리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가끔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열두어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지한 아랫것들이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⁴³

동양식의 평균 나이를 계산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비교적 연구가 많은 청대에는 남녀간 나이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점점 여자측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머리말에서 본 황준센의 산가에서처럼 함께 시어머니 젖을 먹고 남매처럼 성장한 동양식의 경우도 있지만 민국시기에 는 여자가 열 살 이상 많은 경우가 많다. 이유는 바로 ‘등랑매’라고 하는 변종 동양식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등랑매는 망포식, 화등녀 등으로 칭해지는데,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우며 아들이 생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며느리를 들여 놓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린 며느리를 데려다 키우면 아들이 잘 생긴다고 하는 미신도 한몫했다. 아들이 곧 태어나면 다행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수 년 내지 십수 년 뒤에 태어나고 이 경우 부부의 나이차는 10살 넘게 벌

42 『동아일보』 1927년 1월 1일 「나의 고향의 풍속습관」.

43 鄭東愚·鄭東愈(2016), p. 216.

어진다.

중국과 조선의 민며느리는 이처럼 유사한 면이 많았다. 시가에서는 며느리의 친절에 다소간 금전을 지불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으며 며느리에게 원한 것은 가사노동과 농사 보조 등 생산노동이었다. 따라서 점점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조선의 경우 중국의 망포식 처럼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며느리를 입양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3. 동양식의 성행 배경

3.1. 경제적 배경-혼인비용 절감

동양식은 빈곤과 남존여비의 산물이었다. 청말민국 시기에 절정에 달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빈곤층과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남녀 양쪽 집안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이다. 시가 슈조가 일찍이 언급했듯이, “[동양식은] 시가에서는 성인이 된 여자를 들이는데 필요한 고액의 빙채를 면하고, 친정에서는 딸의 양육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주로 경제적 이유에 기초한 것으로, 대부분 중류 이하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⁴⁴

정혼 시 남자 측이 보내는 빙채(체례)는 혼인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다. 정혼에서 완혼(결혼)까지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혼인의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배경이었다. 쉽게 말해 받은 돈 때문에 가볍게 혼인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정혼을 철회할 경우 당을 이후 장(杖) 60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44 滋賀秀三(1981), 『中國家族法の原理』, 東京: 創文社, p. 471.

문제는 재례 액수가 시대가 내려올수록 높아진 데다, 실물 아닌 금전으로 대체되었고 그것이 중하층에서 더 유행한 것이다. 송대 이후 상품경제와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혼인에서 문벌보다 재물을 중시하는 풍조가 유행해 거액의 재례와 장렬⁴⁵이 교환되었다는 연구가 많지만, 청 중기까지도 상층가문은 여전히 문벌을 중시하고 재례와 장렬에 화폐 아닌 비단, 문구 등 예물이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북지역의 경우 중기인 건륭기는 물론 광서시기까지도 혼인에 재물을 중시하지 않았고 그것은 시정소민(市井小民)들이나 하는 일로 보았다.⁴⁶

지방지 민속자료를 보면, 명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집은 민국 시기까지도 여전히 선물(음식, 비단 등) 형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하층에서는 재례를 금전으로 준비해 보냈고 그 액수가 점점 증가해 파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⁷

그런데 “빈부를 불문하고 병례에 반드시 현금이 필요했는데 많을수록 영광으로 여겨 가난한 집에서는 차라리 동양식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⁴⁸라고 하는 조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식은 서민층의 재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약간의 금전 또는 술과 고기로 재례를 대신했고 또 친영에 필요한 가마, 피로연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이다.

1943년 대홍수 때 동양식이 된 샤오초우(小丑)는 기근을 견디지 못한 부모가 고량주 한 되를 받고 일곱 살 된 자신을 동양식으로 팔아 넘겼다고

45 지참금(dowry)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粧奩, 嫁資, 嫁奩 등으로 불린다. 지참금 중 상당수는 시가에서 보낸 재례로 마련했다. 원래는 장신구, 의류가 중심이었지만 가정형편에 따라 현금이나 부동산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혼수와 지참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46 丁世良 主編(1989),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p. 378.

47 丁世良 主編(1989), p. 413; 丁世良 主編, 中南卷, p. 926.

48 連吉浮(1935), 「東流衛生分所兩月工作報告」, 『大公報』(天津) 1935.10.29.

한다.⁴⁹ 주더(朱德)의 아내이자 저명한 여성혁명이 강커칭도 태어난 직후 약간의 술과 고기를 받고 동양식으로 보내졌다고 한다.⁵⁰

동양식을 들일 경우 남자 측의 비용은 최소 1/5은 절감이 가능했고⁵¹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 조선에서도 재례부담 때문에 민며느리가 성행했으며 민며느리를 들일 경우 재례를 1/5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⁵²

그런데 딸을 어린 나이에, 심지어 태어난 직후에 남의 집 며느리로 보내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남자보다는 여자 측 입장이 더 절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혼인연령은 계층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데 대체로 상층 가정에서는 아들을 일찍 결혼시키고 딸은 천천히 시집 보내는 반면, 하층 가정에서는 딸은 가급적 일찍 시집 보내 버리고 아들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⁵³

1930년대 리징한(李景漢)의 조사 결과에서도 가난한 남성은 늦게 장가 가고 가난한 집 딸은 최대한 일찍 시집보냈다. 반면 부자는 어릴 적에 장가 가고 부유한 집 딸은 늦게 시집갔다.⁵⁴ 계층에 따른 성별혼인연령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어지간히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남의 식구가 될 ‘마이너스의 잉여’, 즉 딸을 오래 데리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계층을 불문하고 점점 더 장렬(지참금) 압력이 높아졌다. 가난한 집에서 딸은 성장하기까지 양육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

49 堯山壁(2010), 「童養媳小丑」, 『經典閱讀』(원제 『今晚報』).

50 郭少鋒(2011), 「童養媳當紅軍: 少年康克清紀事」, 『黨史文苑』 10.

51 費孝通(1987), p. 47.

52 혼인적령기의 여자와 결혼하려면 100원 내지 수백 원의 납폐금이 드나, 7~10살 여자와 이와 결혼하면 2, 30원이 든다고 한다. 村山智順(1923), 『朝鮮社會制度史』; 이능화(1926), 김상익 옮김(2009), 『조선여속고』, 동문선, p. 175에서 재인용

53 『邯鄲縣志』 17권(1932), 丁世良 主編(1989), p. 437.

54 李景漢(1931), 「五百一十五農村家庭之研究」, 李文海 主編(2004), 『民國時期社會調查叢書』(人口卷), 福州: 教育出版社, p. 24.

는 데다 점점 경쟁적으로 치솟는 지참금 때문에 딸이 태어나는 즉시 살해(익녀)하거나 차마 그러지 못할 경우 고아시설인 육영당(育嬰堂)으로 보내야 한다. 혹은 남의 집에 비녀(婢女, 여종)로 팔았다. “복건사람들은 혼인 시 남 자 집에서 후한 장례를 요구한다. 그래서 딸을 낳은 집은 이후의 부담을 생각해 태어나는 즉시 물에 빠트려 죽인다”⁵⁵고 하듯이 익녀는 장례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동양식으로 보낼 경우 금전이든 물품이든 약간의 재례를 받을 수 있고, 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⁵⁶ 이런 상황에 대해 민국시기 습관조사보고는, “민간에서는 아들을 중요시하고 딸을 가벼이 여긴다. 한두 명 딸을 낳은 자들은 양육할 여력이 없거나 혹은 훗날 혼수를 절약하고자 대부분 남의 손에 딸을 맡긴다. 그리고 기껏해야 몇 원을 얻는다. 말로는 수양이나 사실은 매매나 마찬가지”⁵⁷라고 지적했다.

겨우 몇 원을 얻었다지만 훗날 혼수나 지참금을 생각하면 그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국시기에 여자측의 지참금 부담은 때로 재례를 능가했기 때문이다.⁵⁸ 과거에는 재례를 받아 그 일부를 지참금으로 충당했지만 민국 시기 강남을 중심으로 재례보다 더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유행했다.⁵⁹ 민국 시기 지방지나 사회조사자료에는 중하층 가정일수록 여자 측의 지참금이 경쟁적으로 늘어나 “가난한 집일수록 딸 부모는 지

55 『民國廈門市志』(1995), 北京: 方志出版社, p. 465.

56 동양식은 어느 정도 익녀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 것 같다. 1924년 광둥성 화현의 경우, “익녀의 풍은 지난 수십 년간 빈번히 들려온 일이다. 최근에는 여자의 몸값이 귀해지면서 가난한 집에서는 딸을 낳을 경우 1년 정도 지나 젖을 떼게 되면 중매인을 통해 동양식으로 만들거나 한다. 이렇게 해서 영아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고 부모는 빙해 2,30원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익녀는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花縣志』 13卷(1924); 丁世良 主編(1995),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 中南卷(下),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p. 688].

57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部 編(2005), pp. 1525-1526.

58 1931년 李景漢의 화북 농촌마을(定縣)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기준, 혼인비용으로 여자측이 남자측보다 최소 2배 이상 소요되었다. 이에 농촌가정에서 딸을 성장하기까지 키우는 일이 드물었다.

59 費孝通(1987), p. 31.

참금을 더 많이 준비하며 “가난한 집 딸은 시집가기 어렵다” “딸 하나 시집보내는 비용이 며느리 한 명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든다”는 말이 자주 보인다. 20세기 초, 조선에서도 여자 측이 준비해야 하는 혼례품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딸 셋을 두면 기둥뿌리가 빠진다”⁶⁰는 속담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딸을 ‘배전화’(賠錢貨)라 부를 정도였다. 돈(지참금)을 갖고 가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지참금 부담이 높은 지역일수록 익녀가 많았던 이유다.⁶¹

딸을 동양식으로 보낼 경우 여자집은 약간의 금전을 받고 거의 빈손으로 시집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 왕웨이나(王維娜)가 산가(山歌) 수집과정에서 만난 동양식 출신의 천진메이(陳金妹)의 경우, 자신은 지참금이 전혀 없이 시가로 보내졌지만 당시 웬만한 집 딸은 모두 거액의 지참금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토지를 지참금으로 갖고 가기도 했다고 술회했다.⁶²

천진메이의 부모처럼 딸을 동양식으로 보내면 양육비와 지참금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친정에서 다소간 금전을 받고 어린 딸을 팔다 시피했기 때문에 시가에서의 위치가 일반 며느리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시가 입장에서 동양식을 들인 것은 재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노동력 확보가 더 절실했기에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며느리를 데려와 일을 시키기도 했다.

3.2. 시가의 노동력 확보

“대부분의 동양식은 노동력으로 충당되었다가 장성하면 혼인했다”⁶³고

60 高橋亨(1914), 『朝鮮の物語集』; 秋葉隆 지(1993), 심우성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p. 96에서 재인용.

61 이에 대해서는 오가와 小川快之(2014)의 논문에 상세하다.

62 王維娜(2009), p. 11.

63 光緒 『長樂縣志』卷12 風俗,

하듯 남자집에서 동양식을 둔 것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였다. 노비를 들 형편이 안 되는 집에서 동양식으로 생산과 재생산(출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동양식은 어느 정도 가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량치차오(梁啟超)는 「여자교육을 논함」(1897)이라는 글에서 과거에 중국 여성은 모두가 분리자(分利者), 즉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소비만 하며 밥을 축내는 존재였다고 했다. 하지만 상류층 여성이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이나 빈곤가정에서의 현실은 달랐다. 반드시 동양식으로 입양된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 해도, “중하층 가정에서 여성은 마치 무한노동을 하는 기계 같았다.”⁶⁴ 여성은 남성과 함께 모심기, 해충구제, 농지다듬기, 벌목 등을 했고 집에 와서는 취사와 세탁 그리고 재봉, 돼지사육, 아이돌보기 등으로 하루종일 쉴 틈이 없다. 남편과 시부모를 돌보고 조금이라도 잘 못하면 온갖 욕설과 매질을 당한다.⁶⁵

강남지역에서 여성은 상품생산을 통해 가계에 크게 기여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이모작이 보편화되었던 청 중기 이후 강남 지역에서는 “남자는 농사, 여자는 길쌈”이라는 ‘남경여직’의 노동분업이 보편화되었고, 양잠이나 제사, 직포를 통해 벌어들이는 딸이나 아내의 수입은 돈으로 환산할 때 남성이거나 형제의 약 80%에 달했다고 한다.⁶⁶

또 명말청초 가흥(嘉興)에서 농촌 부인이 1년 360일을 일할 경우 수입은 장공(長工)이 360일 일해 버는 수입보다 30%나 높다는 계산도 있다.⁶⁷

강남의 토포(土布) 생산이 저물어가던 시기인 1920년 전후, 상해 교외의 농가 여성은 1년에 200필의 포를 짰는데, 한 필당 보통 0.2-0.3원에 팔

64 郭箴一(1937), 『中國婦女問題』, 上海: 商務印書館, p. 148.

65 郭箴一(1937), p. 155.

66 李伯重(1997), 「'男耕女織'與'婦女半邊天'角色的形成: 明清江南農家婦女勞動問題探討之二」, 『中國經濟史研究』1997-3, p. 15.

67 王家范(1988), 「明清江南消費風氣與消費結構描述」, 『華東師範大學學報』2.

수 있으므로 1년 수입이 50원 정도다.⁶⁸ 이렇게 볼 때 딸이 법정혼인연령에 달하는 14세까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딸의 노동만으로도 충분히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친영제(시가살이) 확립 후, “딸은 결국 남의 식구”라고 하는 오랜 관념과 빈곤의 압박으로 인해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딸을 팔거나⁶⁹ 약간의 재례를 받고 동양식으로 보낸 것이다. 반면 시가에서는 양육의 대가로 무상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빈곤으로 인한 노동력의 무상 이전이 동양식 성행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신분상 동양식은 양인이지만薪金(薪白), 돈양(豚養), 아두(丫頭), 비녀(婢女)로 칭하는 지역이 많았다. 동양식에 대한 습관상의 호칭이라지만 그들의 신세가 사실상 친인인 노비나 다름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원사』 형법지에는 시가에서 동양식을 노비로 팔아 넘길 경우 형사처벌을 했는데 거꾸로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 것이다. 거의 맨손으로 시집 온 며느리를 시가 식구들은 가정의 정식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았다. 양육에 대한 보답으로 며느리는 열 살이 되기 전부터 온갖 노동에 시달린다. 시가 식구들은 그에게 ‘주인’이었다.

예컨대 민국 시기 동양식으로 시집을 갔다가 신중국 수립 후 신분을 벗어난 한 여성(張奶奶)은, “저는 다섯 살 때 여기로 시집왔어요. 하루종일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돼지를 먹이고 장작을 패고 남편과 놀아주었지요. 그때는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주인으로 알았어요. 그는 저보다 네 살 많았는데 걸핏하면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곤 했지요. 훗날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의 장공(長工)일 뿐이었

68 李伯重(1997), p. 17.

69 郭箴一(1937)에 따르면 1930년대 강소 북부에서 여성의 노동은 농번기, 농한기를 가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빈곤가정에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딸을 팔아 버리는데 17.8세는 50~60원, 3~4세는 10원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어린아이 중에 동양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조.”⁷⁰

위의 장씨 아주머니는 서문에서 본 황쑤셴의 고향인 광동성 가응의 매현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지역에서 여성노동의 기여도는 매우 높았다. 1920년대 조사에 따르면, “땅은 적고 인구는 많으니 현의 남자 중 외지로나가 일하며 생계를 도모하는 일이 흔했다. … 농사는 모두 여자에게 맡겨졌다. 이에 매현 농민 중 여자가 10중 7,8이었다.”⁷¹라고 한다. 이 지역에 유행한 산가 중에는 “동양식이여 참으로 힘들구나. 밥 짓고 물 길러 여울을 기어오른다네. 식은 죽과 찬 밥만 먹으면서 늘 육만 먹으니 참으로 안쓰럽구나.”⁷²라는 것이 있는데, 동양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의 노동참가 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양식은 시가의 노동자일 뿐 아니라 시가를 위해 남의 집 품팔이까지 했다. 1926년생의 푸친셴(付琴仙)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14살에 동양식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이 부지런한 며느리를 다른 집에 고용노동자로 보내 일당 0.5~1원의 돈을 손에 넣었다.⁷³ 동양식은 신분상 양인이지만 사실상 천인인 노비나 다름없었던 것이다.⁷⁴ 그중 일부는 시가에서 돈을 받고 노비로 팔려 나가기도 한 듯한데 동양식의 법적·신분적 지위의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70 王維哪(1009), p. 16.

71 陳友鵬(1927), 「嘉應農民狀況的調查」, 『東方雜誌』 24(6), pp. 63-64.

72 侯國隆(1994), p. 49.

73 付琴仙 口述, 瞿曉曉·程郁 整理(2007), p. 115.

74 여기에서 ‘노비’는 법적 혹은 신분적 용어는 아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대체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이 시가에 예속되어 노비처럼 사역을 당했다는 점에서 그 지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4. 가족관계

4.1. 고부관계: 딸과 노비 사이

전국 각지에 동양식이 존재했고 명칭도 다양했지만 크게 동양식과 등랑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여아 기준, 만 0~10세 정도에 정혼한 뒤 시가에서 양육하고 성년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다. 후자는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며느리를 들이는 것으로 ‘등랑매’, ‘망포식’, ‘망랑식’(望郎媳) 등으로 불린다. 앞서 본 민사습관자료에 근거해 볼 때 동양식이 많았던 민국시기 강서 남부 농촌지역에서 망포식을 포함한 동양식은 약 85%가 되며 일반 동양식과 망포식의 비율은 각각 55%, 30% 정도 된다.

특이한 사례로 청대에 절강성(浙江省) 태순현(泰順縣)에는 ‘현성식부’(現成媳婦)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과부가 개가 시 미성년의 딸을 데리고 가서 재혼한 남자의 전처 소생 아들과 정혼하는 것이다. 동양식은 재가한 과부에게 딸이자 며느리이기도 하다.

민국시기 지방지 등에는 현성식부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지만, 귀송이에 따르면 민간에 널리 유행한 ‘모박아처’(母博兒妻)가 바로 현성식부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민국 시기에도 여전히 현성식부는 존재했지만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 아닌까 생각된다. 1930년 이전까지 적용된 청률에 따르면 전남편의 자녀와 재혼한 남편의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근친상간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취동모이부자매율’(娶同母異父姊妹律) 조항에 따라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각각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⁷⁵

요컨대 동양식은 크게 (일반)동양식과 등랑매 그리고 현성식부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었던 셈인데 동양식의 운명은 대체로 시어머니가 좌우했다.

75 현성식부에 관해서는 郭松義(2000), p. 262 참조.

시아버지와는 자주 접촉할 기회가 없고 남편은 아내보다 어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고부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현성식부의 경우 모녀에서 고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갈등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료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동양식의 상황은 대체로 학대나 간통, 폭행 등으로 인해 소송사건이 있을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 동양식 중에서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젓먹이 때부터 데려와 기른 며느리의 경우 훗날 시부모와 관계가 비교적 좋았다.⁷⁶ 어릴 적부터 젓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친밀감과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폐야오통도 “내가 관찰한 바로는 유년기에 미래의 시어머니에 의해 길러진 여아는 훗날 시어머니에게 잘 의지했고, 그 관계는 마치 어머니와 딸의 관계 같았다”고 한다.⁷⁷ 반드시 영아가 아니어도 유년기에 데려다 키우면 서로에게 잘 적응해 충돌이 적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들이 곧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며느리, 즉 등랑매(망포식)부터 들인 경우는 어떠했을까? 아들이 곧 태어나면 다행이지만 10년 정도 지나 태어나기도 하고 영영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며느리에게 아들의 양육을 맡겼고⁷⁸ 후자의 경우 며느리를 제가시키거나 양녀로 삼아 데릴사위를 들였다. 며느리는 시가의 성을 갖게 되며 데릴사위는 이 집에서 살며 일을 한다. 데릴사위를 통해 낳은 아이는 며느리에서 딸이 된 어머니의 성을 쓰게 된다. 등랑매가 아닌 일반 동양식의 경우도 남편이 먼저

76 費孝通(1987), Arthur P. Wolf (1980).

77 費孝通(1987), p. 47. 책 구디 역시 동양식이 시가에 적응하기 쉽고 시가 친척과의 관계도 원만해지는 등 일반 혼인보다 적응이 쉽다고 한다. 책 구디 저(1999), 연국희 옮김, 『중국과 인도와 결혼풍습 엿보기』, 중앙M&B, p. 247.

78 책가 산가 중에는 “열여덟 아리따운 아가씨 밤마다 졸린 눈으로 침상에 오르네. 신랑이 자라면 신부는 이미 늙었으니 침상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라네”(十八嬌嬌三歲郎, 夜夜睡目抱上床, 等到郎大妹已老, 目汁浸濕一張床)를 비롯해 꼬마신랑으로 고통받는 등랑매의 탄식을 담은 것이 많다.

죽으면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덩펑롄(鄧鳳蓮)의 사례를 소개해 보면, 태어난 지 40일 만에 펑롄은 양(楊)씨 집의 동양식으로 갔는데 남편의 나이는 2살이었고 시할머니의 극진한 사랑 속에 성장했다. 남편이 13세로 요절하자 시가에서는 친정으로 가도 된다고 했지만 펑롄이 시가에 남고 싶어 하자 한 남자아이를 데려와 펑롄과 짝을 지어 주었고 두 사람은 그 집에서 잘 살았다고 한다.⁷⁹

캉커칭의 경우 태어난 직후 역시 빈곤한 뤼(羅)씨댁의 동양식이 되었지만 남편이 요절한 뒤 시부모가 수양딸로 삼았다. 시부모의 극진한 사랑 속에 성장했으며 특히 양부가 된 뤼치귀(羅奇圭)는 수양딸에게 ‘목란’(木蘭) 등 여영웅의 이야기가 담긴 연극을 자주 보여 주었다. 캉은 양부와 함께 농민 운동을 하다가 주더와 연애결혼했다.⁸⁰

태어난 직후 혹은 유년기에 부모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동양식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덩펑롄이나 캉커칭의 사례처럼 좋은 시어른을 만난다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과부가 된 동양식에게 선택권을 준 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체로는 돈(재계)을 받고 며느리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냈다. 시가의 친척에게 보내 며느리로 삼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를 ‘전혼’(轉婚)이라 했다.⁸¹ 대부분의 시부모에게 동양식 며느리는 노비나 다름없었고 친정부모가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35년에 등랑매(망포식)를 조사한 기자에 따르면⁸² 망포식의 삶은 일반 동양식보다 훨씬 비참했다. 시어머니의 친밀과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되어

79 덩펑롄은 광둥성 梅州 출신이며 1930년대에 동양식이 되었다. 侯國隆은 자신이 만난 70명의 동양식 경험자 중 4명만 학대를 받았고 16명은 시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한다. 侯國隆(1994), p. 48.

80 郭少鋒(2011).

81 王維娜(2009), p. 12.

82 小林(1935), 『湖北陽新的望抱媳』, 『婦女生活』 1(6), p. 117.

남편이 죽으면 순순히 팔려 나갔다고 한다.

이처럼 시가에서 동양식의 지위는 경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학작품이나 언론기사에 남은 동양식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다. 특히 1920·30년대에 발표된 동양식 제재 소설은 한결같이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루윈의 『축복』, 선충원(沈從文)의 『샤오샤오』(蕭蕭), 샤오홍(蕭紅)의 『후란허 이야기』(呼蘭河傳), 빙신(冰心)의 『최후의 안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샤오샤오』를 제외하면 동양식은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 끝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소설에서 동양식의 최대 가해자는 본인 또한 동양식 출신인 시어머니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가들이 볼 때 시어머니 자신이 받은 억압을 며느리에게 전이함으로써 끝없이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중국인의 ‘비열한’ 근성과 닮았다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시로즈 노리코(白水紀子)는 이를 가부장제의 내면화로 해석했다. 역시 동양식 출신으로 며느리 시절에 꺾박받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과부가 되면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가부장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⁸³

1920·30년대의 동양식 제재 소설을 쓴 작가들은 고질적인 악습을 드러냄으로써 사회개조에 기여한다는 목적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모진 행동은 비열한 근성 때문이라기보다, “세속에서는 어린 며느리를 마치 노비처럼 여겨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거나, “돈을 주고 동양식 며느리를 사들인 시부모는 죽을 때까지 친정에 보내주지 않는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룬다”⁸⁴고 하듯 며느리를 돈으로 사 왔으니 노비나 다름없고,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⁸⁵ 앞에서 본 것

83 이와 관련한 연구로 白水紀子(2001), 『中國女性の20世紀: 近現代家長長制研究』, 東京: 明石書店, p. 24.

84 徐珂(1984), 『清稗類鈔』5 婚姻類, 北京: 中華書局, p. 1993.

85 중국의 지방지를 통해 볼 때 동양식을 보내고 입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시가에서 붉은 종이에 쓴 금전을 건넸고, 때로는 가족이나 곡식 등 실물이기도 하다.

처럼 겨우 술 한 병, 고기 한 근에 딸을 넘긴 부모도 있지만 대체로는 약간의 금전이 오갔다. 페이샤오통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100원이었다. 소설에서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며느리 길들이기’에 온 정력을 쏟는데 그 모습은 마치 소나 말 같은 가축을 길들이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동양식을 들이는 순간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순종적인, ‘노비 같은 며느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시아버지와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중국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서로 마주칠 일이 많지 않지만 성적 학대는 적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민국초기 대리원⁸⁶은 동양식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남편이 강제로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한 경우 그리고 “시아버지가 동양식을 학대해 불구로 만들거나 혹은 강간한 경우”로⁸⁷ 한정했기 때문이다.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동양식에게 시아버지의 폭행과 성적인 학대가 많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005년의 일이지만, 간질을 앓는 아들을 위해 동양식을 들이고 난 뒤 손주가 태어나지 않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임신시켜 후대를 잇게 하기도 했다. 차오차오링(曹巧玲)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친정 오빠의 재례를 마련하기 위해 2,000위안에 동양식으로 팔렸다고 한다.⁸⁸ 이처럼 동양식은 현재진행형이며, 동양식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코 드러날 수 없는 사건이 허다했을 것이다.

86 20세기 초, 청왕조는 서구 인권개념과 여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1911년에 대청민율초안을 만들었지만 청조가 곧 멸망한 탓에 시행되지는 못했다. 민국 초기에는 대청율례를 그대로 적용한 대청현행령률이 기본법이었고, 이에 근거해 최고심판기관인 대리원(大理院)이 판결을 했다. 대리원은 동양식을 ‘定婚之妻’로 명명하고 기혼여성에 준해 심판했다.

87 大理院編輯處 編(1919), 『大理院解釋例要旨滙覽』 第1卷, 北京: 大理院收發所, p. 38; 簡玉祥(2017), 「民國時期司法視野下童養媳問題研究」, 『鄭州師範教育』 6(1), p. 76 재인용.

88 李萬軍(2005), 「童養媳怒上法庭爭自由」, 『法制時空』 3(5).

4.2. 부부관계: 남매와 부부 사이

동양식을 들인 남자집은 반드시 며느리처럼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다. 하루라도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서, 혹은 아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훗날 결혼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들이기도 했다. ‘등량매’처럼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며느리부터 들이기도 했고 혼기를 놓친 아들 — 대체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 을 위해 어린 동양식을 들이기도 했다. 이에 신부가 10살 이상 연상이거나 반대로 신랑이 아버지 나이대인 경우도 있어 부부간에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동양식의 출산율은 일반 부부보다 낮았다는 조사가 있다.

1950~60년대에 대만 북부의 한 마을에서 현지답사를 하며 동양식을 조사한 인류학자 아서 울프는 웨스터마크(E. A. Westermarck)의 이론⁸⁹을 응용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⁹⁰ 이 마을에서 갓 태어난 여아의 70%가 시가에서 양육되었고 반드시 가난한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그가 만난 동양식 경험 여성에 따르면 그들은 성혼 전까지 자신을 길러 준 시부모를 친부모로 생각했고 다른 형제자매와는 시동생, 시누이가 아닌 형제 자매와 같았다고 한다.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이다. 시부모는 아들을 가리키며 “이제는 네 남편이다. 빨리 우리를 위해 손자손녀를 낳거라”고 했으며, “형제 같은 사람과 잠자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싫고 흥미가 안 생기죠.”라고 수치스러워했다.

이 같은 성적 이끌림의 결여는 동양식의 출산율 저하를 초래했는데, 울프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동양식의 출산율은 전통적 혼인부부의 출산율에

89 유소년기에 함께 자란 근친자는 상대방에 대한 성적 흥미를 잃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으로 ‘웨스터마크 효과’로도 불린다. 웨스터마크(Edward Westermarck)(1891), 정동호·신영호 공역(2013), 『인류혼인사』(*A Short History of Marriage*), 세창출판사 참조.

90 Arthur Wolf (1992), “Fertility in Pre-Revolutionary Rural China,” Thomas Rawski and Lillian Li (eds.), *Chinese History in Economic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54.

비해 40% 정도가 낮았다. 그 이유로 그는 3세 이전 함께 양육된 남녀는 훗날 성욕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며, 만일 8세 이후에 양육된 경우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잭 구디도 동양식이 시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어도 남편에게 성적 매력의 대상은 못 되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⁹¹

울프가 조사한 대상은 대체로 함께 자란 부부라 비슷한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여자가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다.

청 중기 동양식 연구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 중 남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았다.⁹² 그런데 청말 특히 태평천국 이후 극심한 성비불균형과 재레부담 상승으로 인해 가난한 남성의 혼인난은 날로 높아지는 반면, 어차피 남의 식구가 될 딸의 양육비를 아끼기 위해 가난한 집에서는 ‘혈분포양’(血盆抱養)이라 하듯 막 태어난 핏덩이 상태에서 등량매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⁹³

민국 시기 가요에는, “불쌍하구나 동양식이여 열여덟 누나와 세 살 꼬마신랑이라니. 해가 저물면 요람에 재우나 오줌으로 이불을 적시는구나”⁹⁴라고 하듯, 누나, 아니 마치 보모처럼 남편을 기른 동양식의 비애가 남긴 노래가 다수 발견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이끌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선충원의 소설 『샤오샤오』⁹⁵의 꼬마신랑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 준 9살 연상의 아내 샤오샤오가 몰래 만나 사랑을 나누는 화거우(花狗)라는 이름의 건장한 인부를 형처럼 따르고 두 사람이 정사를 하는 동안에도

91 잭 구디 저(1999), p. 247.

92 王躍生(1999), p. 19.

93 丁世良(1995) 中南卷 上, p. 520.

94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2003), 『中國歌謠集成: 江西卷』, 中國 ISBN 中心, pp. 477-478.

95 스저춘 등 저(2010), 이옥연 편역,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 창비, pp. 121-140.

장난만 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 꼬마신랑은 우여곡절 끝에 샤오샤오와 화거우 사이에 태어난 아들(나이상 동생)을 먼훗날 태어난 자신의 친생자와 형제처럼 키우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소설적이다. 왜냐하면 동양식의 간통으로 인한 소송사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식이 간부(奸夫)와 함께 어린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⁹⁶

시부모의 학대를 받더라도 남편이 의지처가 된다면 그럴저럭 견딜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 다른 동양식들과 어울려 집단자살을 하는 사례가 민국시기 잡지에 자주 나타나는데,⁹⁷ 양쪽 집안의 생존수단으로 거래되어 팔리다시피 시가에 들어가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동양식의 운명이었다.

5. 맺음말

민국 시기, 지역에 따라 80~90%에까지 이른 동양식은 농촌의 경제적 파탄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잇따른 국내외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딸을 둔 가정에서는 결국은 남의 식구가 될 것이고 돈만 축낸다 여긴 딸부터 숨어 냈다. 그 극단이 익녀이며 동양식은 익녀를 피하고 살아남은 딸과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중국은 서구 인권관념의 영향을 받아 청말(1908)에 ‘인신매매금지령’을

96 郭松義(2000)와 王躍生(2003)의 저술에 있는 동양식 형사사건은 거의 대부분 간통에 의한 것이었다. 청말민초 상해에서 발생한 동양식 사건 역시 대부분 간통이 원인이었다. 간통 중에는 남편이 함께 사는 동양식 아내를 범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동양식은 법정혼인 연령이 되어야만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이미 정혼했기 때문에 그 처벌은 가벼웠다.

97 필자가 검토한 바 청말의 『申報』에서 1930·40년대의 『婦女生活』 『女子月刊』 등 주요 여성잡지에 이르기까지 잡지까지 동양식의 자살에 관한 기사는 끊이지 않았다. 允(1934), 「自殺同盟」, 『女子月刊』 3(11); 필자미상(1935.1.), 「惠安婦女同盟自殺」, 『婦女月報』 1935.1. 등 참조.

반포했다. 이어民国 시기에도 금품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괴나 인신매매를 엄벌했다. 하지만 1933년 국제연맹 부녀조사단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제일의 여성 인신매매 국가였다.⁹⁸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가족을 위해 딸을 희생하거나 아사 직전 자기 스스로를 팔아(自賣) 가족을 살리는 것에 대해 인정상 눈감아 주는 관행이 법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1932년 한 잡지의 기사에 따르면 말라비틀어진 수십 명의 농촌여성이 매일같이 배를 타고 소도시로 와서 20원에 팔리곤 했는데 이는 돼지 한 마리 값과 같았다.⁹⁹

동양식은 사실상 약간의 금전을 받고 딸을 넘기는 것이지만 노골적인 인신매매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1908년 인신매매금지법으로 노비를 매매할 수 없게 되자 양녀, 양식(養媳) 명목으로 노비를 매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¹⁰⁰ 이는 동양식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노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익녀와 그로 인한 성비불균형(남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묵혀’한 것도 증가세를 부추긴 요인이었다.

특히 태평천국운동(1851~1864)와 항일전쟁(1937~1945) 시기에 폭증한 것은 이때 만연했던 강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¹⁰¹ 태평군이 휩쓸고 지나간 남부지역에 동양식이 급증한 바 있으며, 또 항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성폭행이 만연하자, “부모는 딸이 강간당할 경우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¹⁰²고 하듯이, 강간을 당한 딸이 시집가기 어렵다 여겨 아예 영아기에 동양식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중국과 같은 형태의 동양식은 아니지만, 법을 무시하고 겨우 일곱 살 정도밖에 안 된 딸을 시집

98 필자미상(1933), 「國聯婦女調査團主張廢止港滬公娼」, 『東方雜誌』 30(13).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인신매매 최다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99 蔭萱(1934), 「婦女售價如豬: 二十元一担」, 『女子月刊』 3(7). 1930년대 농촌경제 파탄과 부녀의 참상에 관해서는 羅琮(1995), 『苦難與抗爭: 三十年代中葉經濟與婦女』, 中國婦女出版社(상해도서관소장) 참조.

100 仁井田陞(1966[1942]), 『支那身分法史』, 東京: 東方文化學院, p. 885.

101 주 33 참조.

102 明秋(1940), 「華北婚姻制度及解決」, 『中國婦女』 第7期.

보내는 극단적 조혼이 근절되지 않는 인도처럼, 강간이나 성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딸을 빨리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는 현명한 처사일 수 있다. 최소한 사위가 보호해 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¹⁰³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1세기 들어서도 농촌에서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딸을 동양식으로 팔았으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개혁개방 이후 날로 치솟는 차이리(채례) 마련을 위해서이다.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생각과 혼인의 성립에 반드시 물질적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오랜 관념은 청말민초에 급격히 유입된 서구사상의 물결과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농촌이나 빈곤층에서는 견고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민국 시기에 동양식이 ‘핫 이슈’가 된 것은 그 비율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여성의 희생과 매매, 부모의 강요에 의한 동양식이라는 혼인형태가 모성과 아동의 발견, 그리고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 추구라는 시대사조¹⁰⁴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시대사조의 담당자인 지식인들이 문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농민과 노동자 등 사회의 하층민과 여성에게 관심을 돌리자고 주장했던 ‘문학혁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양식은 대부분 빈곤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지닌 사람이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서 그 모든 것을 한몸에 가진 동양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양식은 오로지 수모와 학대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유형이 있었고 다양한 가족관계가 존재했다.

103 로이드 로버츠 수(2019), 심수미 옮김, 『여자 전쟁』, 클 출판사, 제10장(인도편) 참조. 저자인 수도 말했지만, 여자 측 부모의 뜻과 달리, 현실에서는 나이 많은 사위가 어린 딸을 성노예로 삼아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참고로 중국의 동양식은 인도의 조혼과 달리, 법적 혼인연령으로 성혼하기까지 성관계를 할 수 없다.

104 모성과 연애가 1920년대 한·중·일 세 나라 지식인들 사이에 주요 담론을 구성한 것은 엘렌 케이(Ellen Key)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천성림(2004), 「모성의 발견: 엘렌 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87 참조.

참고문헌

1. 사료

- 『花縣志』13卷(1924),臺北:成文出版社.
- 『民國廈門市志』(1995),北京:方志出版社.
- 『婦女月報』1935.1.
- 郭衛 編,吳宏耀·郭恒·李娜 點校(2013),『大理院判決例全書』,北京: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徐珂(1984),『清稗類鈔』5 婚姻類,北京:中華書局.
- 小林(1935),「湖北陽新的望抱媳」,『婦女生活』1(6).
- 孫星衍 纂(1990),『光緒南匯縣志』卷20「風俗」,江蘇古籍出版社.
- 楊立新 主編,楊立新 校點(2002),『大清民律初案·民國民律草案』,吉林:人民出版社.
- 連吉浮(1935),「東流衛生分所兩月工作報告」,『大公報』(天津)1935.10.29.
- 雲裳(1934),「中國婦女自殺原因的檢討」,『婦女共鳴月刊』3(11).
- 劉貴英(1937),「童養媳的苦痛」,『江西婦女』1.
- 蔭萱(1934),「婦女售價如猪:二十元一担」,『女子月刊』3(7).
- 李景漢(1931),「五百一十五農村家庭之研究」,李文海 主編(2004),『民國時期社會調查叢書』(人口卷),福州:教育出版社.
-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部 編,胡旭晟 點校(2005),『民事習慣調查報告錄』,中國政法大學出版社.
- 田壽 校點(2000),『大清律例』,北京:法律出版社.
- 陳友鵬(1928),「嘉應農民狀況的調查」,『東方雜誌』24(6).
- 丁世良 主編(1997),『中國地方志民俗資料彙編』中南卷,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 丁世良 主編(1995),『中國地方志民俗資料彙編』華東卷,北京:書目文獻出版社.
- 丁世良 主編(1989),『中國地方志民俗資料彙編』華北卷,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2003),『中國歌謠集成:江西卷』,中國 ISBN 中心.
- 中國地方志集成 編(1995),『民國廈門市志』,北京:方志出版社.
- 胡朴安(1990),『中華全國風俗志』(下篇 卷四),浙江:中州古籍出版社.
- 村山智順(1923),『朝鮮社會制度史』.
- 高橋亨(1914),『朝鮮の物語集』.

2. 연구서

- 구디, 짝(1999), 연국희·박정혜 공역, 『중국와 인도의 결혼풍습 엿보기』, 중앙.
- 김두현(1985),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 김완섭(1975), 『한국혼인고』, 고려대출판부.
- 도이힐러, 마르티나(2003), 이훈상 옮김, 『한국의 유교와 과정』, 아카넷.
- 수, 로이드 로버츠(2019), 심수미 옮김, 『여자 전쟁』, 클 출판사.

- 스저춘·루선·위파푸·전충원·라오서·명링·빠진 등(2010), 이옥연 편역,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 창비.
- 웨스터마크(Westermarck, Edward)(1891), 정동호·신영호 공역(2013), 『인류혼인사』(*Short History of Marriage*), 세창출판사.
- 이능화(1926), 김상익 옮김(2009), 『조선여속고』, 동문선.
- 鄭東愚·鄭東愈(2016), 안대회 역, 『晝永編』, 휴머니스트.
- 秋葉隆(1993), 심우성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 郭松義(2000), 『倫理與生活: 清代的婚姻關係』, 商務印書館.
- 郭松義·定宜庄(2005), 『清代民間婚書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郭箴一(1937), 『中國婦女問題』, 上海: 商務印書館.
- 羅琮(1995), 『苦難與抗爭: 三十年代中葉經濟與婦女』, 中國婦女出版社.
- 費孝通(1987), 『江村經濟: 中國的農民生活』, 香港: 中華書局.
- 謝重光(2005), 『客家文化與婦女生活』, 上海古籍出版社.
- 王躍生(2003), 『清代中期婚姻衝突透析』,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魏宏遠(2003), 『二十世紀四十年代太行山地區社會調查與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李小江(2003), 『讓女人自己說話: 親歷戰爭』, 北京: 三聯書店.
- 鍾敬文 主編(2008), 『中國民俗史』(民國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2003), 『中國歌謠集成: 江西卷』, 中國 ISBN 中心 2003.
- 中華文化通志編委會 編(1999), 『中華文化通志』第9卷,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陳鵬(1990), 『中國婚姻史』, 北京: 中華書局.
- 肖愛樹(2005), 『20世紀中國婚姻制度研究』,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 白水紀子(2001), 『中國女性の20世紀: 近現代家父長制研究』, 東京: 明石書店.
- 仁井田陞(1966[1942]), 『支那身分法史』, 東京: 東方文化學院.
- 仁井田陞(1966), 『中國の農村家族』, 東京大學出版會, 第3版.
- 滋賀秀三(1981), 『中國家族法の原理』, 東京: 創文社.
- Wolf, Arthur P. (1980), *Marriage and Adoption in China, 1845-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 연구논문

- 노태돈(1983), 「고구려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일고찰」,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 이기문(1997), 「민머느리」, 『새국어생활』 7(4).
- 천성림(2004), 「모성의 발견: 엘렌 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87.
- 簡玉祥(2017), 「民国时期司法视野下童養媳問題研究」, 『鄭州師範教育』 6(1).
- 郭少鋒(2011), 「童養媳當紅軍: 少年康克清紀事」, 『黨史文苑』 10.
- 郭松義(1998), 「清代的童養媳」, 『동양학연구』 4.
- 明秋(1940), 「華北婚姻制度及解決」, 『中國婦女』 第7期.

- 付琴仙 口述, 瞿晓晓·程郁 整理(2007), 「上海浦东童养媳个案调查记录」, 『史林』增刊.
- 温文芳(2005), 「晚清童养媳的婚姻状况及其盛行的原因」, 『甘肃行政学院学报』2.
- 王家范(1988), 「明清江南消费风气与消费结构描述」, 『华东师范大学学报』2.
- 王维娜(2009), 「婚姻, 性别与山歌」, 『民间文化论坛』12.
- 王春春(2010), 「从人口调节看清代的溺女婴和童养媳现象」, 『法制与社会』5.
- 刘毅(2005), 「关于古代童养媳现象的思考」, 『中共郑州市委党校学报』77.
- 李奎原(2016), 「女泣亦如诉: 从民间歌谣看中国历史上的童养媳」, 『文教资料』721.
- 李圭原(2016), 「近代中国童养媳别称研究」, 『文史博览』5.
- 李萬軍(2005), 「童养媳怒上法庭争自由」, 『法制时空』3(5).
- 李伯重(1997), 「男耕女织'与'妇女半边天'角色的形成: 明清江南农家妇女劳动问题探讨之二」, 『中国经济史研究』3.
- 张珣(2000), 「妇女生前与死后的地位: 以养女与养媳等为例」, 『考古人类学刊』(臺灣大) 56.
- 田红湖(2016), 「近代溺女风气中的嫁妆问题」, 『唐山师范学院学报』1.
- 曹婷婷(2014), 「清童养媳现象探析: 以江浙地区为例」, 『石家庄学院学报』9.
- 何定华(1983), 「童养媳考略」, 『社会』1.
- 胡群英·曹水旺(2020), 「最后的嫁歌: 关于和平县客家新娘歌的田野调查」, 『嘉应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 38(2).
- 黄振威(2016), 「民国时期财婚中的彩礼习惯研究: 以民国社会习惯调查报告为视角」, 『知与行』5.
- 侯國隆(1994), 「关于舊时梅州客家童养媳问题的探讨」, 『广东史志』4.
- 小川快之(2014), 「清代江西·福建における'溺女'習慣と法について」, 山本英史 編, 『中國近世の規範と秩序』東京: 東洋文庫.
- Siu, Helen(1993), "The Reconstitution of Brideprice and Dowry in South China," in Deborah Davis and Stevan Harrell (eds.), *Chinese Families in the Post-Mao Er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lf, Arthur(1992), "Fertility in Pre-Revolutionary Rural China," Thomas Rawski and Lillian Li (eds.), *Chinese history in Economic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원고 접수일: 2024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5월 10일

ABSTRACT

Family Member or Maid-servant? Adopted Daughters-in-Law in Modern China

Chun, Sung-lim*

An adopted daughter-in-law (童養媳) refers to someone who was sent to her future in-laws' home when she was a baby or girl and then married into the family when she became an adult. As a marriage custom, the prototype of an adopted daughter-in-law can be found in Dongokje (東沃沮) of ancient Korea. In China, adopted daughters-in-law appeared in the Sung Dynasty and this custom flourished during the Late Qing and Republican periods of China.

This custom came about through a combination of poverty and the notion that daughters could be treated as worthless. In particular, it was popular among the lower classes, because men could reduce the betrothal gift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women could be exempted from having a dowry.

This article compares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adopted daughters-in-law with the marriage customs of Dongokje and Joseon, and re-evaluates the importance and value of women's labor in domestic and agricultural production during the Late Qing and Republican periods.

*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KAIST

In both Joseon and China, in general, adopted daughters-in-law were at least 10 years older than their husbands. This is due to the purpose of bringing in a daughter-in-law to acquire free labor. In this way, poor families that could not afford a servant could take in an adopted daughter-in-law who would work like a maidservant.

Most adopted daughters-in-law had a low status at home. There were also many cases of being mistreated by the mother-in-law or being sexually assaulted by the father-in-law. However, most of these hardships came to light through criminal cases. In some case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in-law was as close as the relationship of the birth mother and daughter, and when the son died first,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 daughter-in-law was adopted as a daughter or a son-in-law was brought in to live with them.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status of adopted daughters-in-law because it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who experienced it. However, their situation, as depicted in literary works and media articles, was inevitably miserable. The reason is likely that the daughter-in-law is a symbol of old China.

Keywords Adopted Daughter-in-law, Family, Maidservant, Poverty, Betrothal Gifts, Value of Female Labor